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31
----------	-------

발의연월일 : 2026. 4. 1.

발 의 자 : 서삼석·박용갑·허영  
박민규·윤준병·김교홍  
신정훈·문금주·정준호  
정진욱·임미애·조인철  
이개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전국의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령층 등산객의 증가와 개인·소규모 산행 확대 등으로 산악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산악구조대의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어 구조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법률 제 호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산악구조대의 운영) ① 숲길관리청은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u>운영할 수 있다.</u></p> <p>② · ③ (생략)</p>	<p>제28조(산악구조대의 운영) ① --</p> <p>-----</p> <p>-----</p> <p>-----</p> <p>-----</p> <p>-----</p> <p>--<u>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